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382
------	------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시흥행궁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조대왕의 현릉원 능행의 유숙처였던 시흥행궁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민의 역사·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시흥행궁전시관 설치, 관람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제12조)
- 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23. 7. 27. ~ 2023. 8. 16.)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일부 반영(가족정책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행궁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역사·문화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역사문화시설 제공과 역사인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흥행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제3조(위치) 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4길 6, 시흥5동 복합청사 6층에 둔다.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행궁 관련 콘텐츠 전시 및 제작
2.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시흥행궁 관련 강연·강습·연구 및 전시회 등의 개최
4. 시흥행궁 홍보
5. 시흥행궁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콘텐츠 및 체험·교육 프

로그래밍 개발을 위해 전시관에 전문 학예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흥행궁과 전시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① 전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2. 토요일 09:00부터 14:30분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휴관일)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전시관 시설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9조(임시휴관일 등 안내) 구청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호에 따라 전시관의 휴관일을 따로 정하거나 이용시간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2.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관리하는 사람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4.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제12조(변상조치 등) 구청장은 전시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품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시흥행궁 및 금천구의 문화유산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 등의 비용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료비 등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참가 구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시흥행궁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 신기철
연 락 처	2627 - 1455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